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며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마이스(MICE)산업”이란 국내·외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전시·박람회 등 복합산업이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2조)
- 나.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안제3조)
- 다. 시장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발전 방

- 향, 마이스산업 유치 및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안 제4조)
- 라.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마.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자격,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바.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
- 사.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0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회의의장 (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며 관광 및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s) :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 :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국제회의 유치 및 전시산업의 촉진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이스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발굴 또는 개최지원
2.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4. 국내·국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혹은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인센티브 제공) 시장은 국제·국내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협력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0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동조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회의의 개최·유치·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21조 ☐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제회의도시"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를 말한다.
5. "국제회의 전담조직"이란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6.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이란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 전문인력, 전자국제회의체제, 국제회의 정보 등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시설, 인력, 체제, 정보 등을 말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국제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건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회부대행사"란 전시회와 관련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최되는 설명회, 시연회, 국제회의 및 부대행사 등을 말한다.
4. "전시시설"이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전시시설사업자 :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 나. 전시주최사업자 :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 다. 전시장치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 라. 전시용역사업자 :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사이버전시회"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

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안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문화복지위원회 신동수 의원